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보 도 참 고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21.10.27.(수)

책 임 자	금융위 은행과장 김 연 준(02-2100-2950)	**담 당 자**	송 용 민 사무관 (02-2100-2951)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홍 성 기(02-2100-2630)		허 성 사무관 (02-2100-2632)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02-3145-8020)		김 욱 배 부국장 (02-3145-8022)

제 목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1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

□ 금융위원회는 10.27일 **정례회의**에서 10.25일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은행과는 10.22일 씨티은행에 대하여 동 조치명령안을 사전통지

○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의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 2.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 4. 금융상품에 대하여 투자금 등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급부의 최소 또는 최대 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①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② 수수료 및 보수

□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소비자 불편, 권익 축소 가능성이 단순히 존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되며,

○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하더라도 그 내용의 **충실성 여하**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조치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 참고3)

○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

○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할 것

□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 향후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2 은행법 상 인가대상 여부 판단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경우에 대하여, **은행법 상 인가 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왔습니다.

※ 법률자문단(7~10월중 3차례 개최), 금융위원 간담회(10.15), 법령해석심의위원회(10.22) 등을 통해 논의

□ 금융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그간의 검토 및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기업고객에 대해서만 영업*)하여 **주요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은행법 제55조 상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씨티은행의 주요자산(대출채권, 유가증권, 파생상품, 신탁) 총액(68.6조원) 중 비중: **소매금융부문 30.4%**(20.8조원), **기업금융부문 69.6%**(47.8조원)

> **은행법 제55조(합병·해산·폐업의 인가)** 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1. 분할 또는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 3.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

※ **법률자문단,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들 모두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판단근거 >

❶ 은행법은 **영업양도**의 경우 중요한 **"일부"의 영업양도*도 인가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폐업**의 경우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입법자는 **일부 폐업은 인가대상으로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인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한 일부의 개념에 대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은행법이 인가대상으로서 **해산과 은행업의 폐업**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산*에 준하는 영업 폐지만 인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 통상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파산 등)을 의미

- 현행법상 전부 폐업 이외의 사항에 대해 **인가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폐업인가 대상**으로 볼 경우 향후 다양한 사례들이 **인가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❷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다른 법적수단**(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조치명령)이 존재하므로 **법문언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폐업 인가 대상으로 볼 **실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 **인가대상으로 보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해 주어야** 하며, **조치명령**의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 **사실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❸ 소매금융사업을 폐지하면서 은행업 폐업인가를 받지 않았던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은지점인 HSBC는 '13.7월 국내 소매금융 업무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총 11개 지점 중 10개 지점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외은지점 폐쇄인가는 받았으나 은행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폐업인가는 받지 않았음

3 기타 논의사항 및 향후 계획

□ 금융위원장은 오늘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발동하는 조치명령**임을 언급하면서,

○ 씨티은행이 조치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면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영업대상 축소가 인가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것은 **은행의 영업전략 변화** 등이 **국민생활 및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 **현행법 하에서는** 영업대상 축소를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불가피**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자산구성 또는 영업대상 변경 등을 **인가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하여 **필요 시 제도 정비를 추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향후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상 인가대상 확대 등 법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해외사례 조사, 법률전문가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1 관련 Q&A

1.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상 인가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은행법 문언**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은행법 제55조 상 폐업 인가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 **설령 폐업 인가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인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인가를 거부할 수 없음**

* **폐업인가 요건**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9)
①해당 은행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②예금자 등 이용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 은행법상 **폐업인가의 주요요건**은 "예금자 등 **이용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인바,

○ **조치명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사실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조치명령을 통해 **인가로 의도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소매금융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임

2. 씨티은행이 추후 매각을 재추진하도록 금융위원회가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를 저지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콜롬비아 씨티은행은 '16년 추진한 소매금융 매각이 여의치 않자 일단 매각을 유보하였는바(2년 후 매각을 재추진하여 성공) 한국씨티은행이 매각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 은행 **영업부문 매각 여부, 시점** 등은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임

○ 설령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폐업 인가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는 인가요건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할 뿐 **은행의 영업부문 매각 여부, 시기 등에 관여할 수 없음**

□ 콜롬비아 씨티은행 사례는 **당초**('16년) **매각추진 시 매수의향자가 선정**되었으며, **추가 협의 끝에** 2년 후 해당 매수의향자의 **자회사에 매각한 사례**로 **매각을 유보한 사례로 보기는 어려움**

3. 과거 HSBC의 소매금융 업무 철수시에는 금융위 인가를 받았는데?

□ 은행법상 **은행업의 폐업인가**(법 제55조 제1항)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 인가**(법 제58조 제1항)는 **별개의 제도**이며 **인가요건 등도 차이**가 있음

* **외은지점 폐쇄인가 요건**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8)

① 자산·부채 정리계획의 적정성 및 예금자 등 채권자 보호 지장 여부

② 내국인 근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계획 등의 적정성 여부

□ **외은지점인 HSBC**는 소매금융 철수 과정에서 **외은지점 폐쇄에 대한 인가**를 받았으며 **은행업의 폐업에 대한 인가**는 **받지 않았음**

○ 은행법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경우 **신설**하거나 **폐쇄**할 때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대상의 축소**는 **명시적 인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임

4. 과거 하나은행의 영업부문의 일부 폐지는 금융위 인가를 받았는데?

* '05.6.10일 하나은행은 자산운용회사 업무의 일부 폐지를 신청하였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에 대한 인가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주장 관련

□ 해당 사안은 하나은행이 겸영업무로 영위하던 **자산운용업* 전부**에 대한 **폐지 인가**를 신청('05.6.10)하여 금감위가 인가한 사항으로,

* 당시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감독 근거법률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또는 업무 폐지의 경우 금감위 인가를 받도록 규정

○ **해당 금융업 전부를 영위하지 않는 경우**였다는 점에서 영업대상을 축소하여 금융업을 지속하는 경우와는 **성격이 다름**

참고2 씨티은행 현황

1. 일반 현황 (2020.12월말)

□ 설립일 : 1983. 3. 5. 한미은행 은행업 본인가
2004.11. 1. 씨티은행 한국지점 영업양수

□ 은행장 : 유 명 순 (2020.10.27. 취임)

□ 임직원수 : 3,500명 (임원 18명)

□ 조직(점포수) : 3그룹 30본부 12센터 82부 13팀 (점포수 : 43개)

□ 주요주주 현황 :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99.98%)

* 美 씨티은행(Citibank N.Y.)의 자회사

2. 재무 현황 (은행계정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자산총액	456,849	427,949	449,857	456,023	452,447
총 여 신	249,797	241,644	232,051	228,764	243,493
총 수 신	257,505	251,525	262,260	264,027	273,077
자기자본 (납입자본금)	65,418 (15,914)	66,808 (15,914)	60,532 (15,914)	61,978 (15,914)	63,406 (15,914)
당기순이익	2,121	2,437	3,074	2,794	1,878
BIS비율	18.37	18.93	18.93	19.56	20.06

참고3 금융위원회의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 전문

□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한다.

□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아래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

가. **은행 이용자 보호계획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예) 이용자에게 폐지되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안내·공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보호**,
단계적 폐지 전 과정이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

나. 상품·서비스별 단계적 **폐지 세부계획 및 이용자 보호방안**

* (예) 각 서비스·상품 중지내용 및 시기, 만기시 처리과정 등 이용자 **사전안내·설명**계획,
금리, 수수료, 부가서비스 등 **기존계약의 거래조건 운영**계획,
기존 계약의 **해지** 또는 타사 **이전 권유·유도시 이용자 보호**방안

다. 영업점,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영업채널 운영계획 및 이용자 보호방안**

* (예) 단계적 폐지과정에서의 **영업점 운영계획** 및 **점포폐쇄시 이용자 보호**방안
(예: ATM기기 및 콜센터 확충 등 대체수단 운영)

라.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 (예)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위탁·제휴업체 관리 등을 포함)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계획

마.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 조직·인력 운영계획**

* (예) **이용자 민원 및 불편사항**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한 **조직·인력·시스템 운영**계획,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전반을 총괄·관리하는 조직·인력체계 운영**계획,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절차 운영**계획 등

바. **기타 은행 이용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참고4 | HSBC의 국내 소매금융 철수 사례

1. 경 과

□ HSBC는 **국내 소매금융 업무 철수 계획**을 발표('13.7.5)

□ 금융위는 HSBC의 **10개 지점 폐쇄*에 대해 예비인가('13.10.2)·본인가**('14.2.5)

* 총 11개 지점 중 서울지점을 제외한 10개 지점 → '14.3.20일 폐쇄

* HSBC의 총자산(22.4조원('12말)) 중 폐쇄대상 10개 지점의 자산(1.7조원('13.7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7.6%** 수준이었음

2. 금융위 인가내용

□ 외국은행이 국내 소재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한 **은행법 제58조 제1항 상의 인가 제도**를 적용

<외은지점 폐쇄 관련 적용 법령 >

○ 은행법 제58조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①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서... 지점·대리점을...폐쇄하려는 경우에는...제55조(합병·해산·폐업의 인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인가 심사요건(은행법 시행령 §24의8②)

① 자산·부채 정리계획의 적정성 및 예금자 등 채권자 보호 지장 여부

② 내국인 근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계획 등의 적정성 여부

○ **법령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가 결정

* ① 폐쇄지점의 자산·부채가 모두 서울지점으로 이전될 예정이므로 자산·부채 정리계획에 문제가 없고 예금자 등 채권자 손실초래 우려는 없음

② 대부분의 직원이 명예퇴직에 동의하였고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재배치할 예정으로서 노조도 이의제기하지 않는 등 내국직원 보호계획에 문제가 없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